

Part

V

●● SW 사업 관련 각종 신고제도 안내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ver 3.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Part V. SW 사업 관련 각종 신고제도 안내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

● SW사업 입찰을 참가하시려면 SW사업자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 목 적

– 소프트웨어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함

●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운영지침

● 신고제도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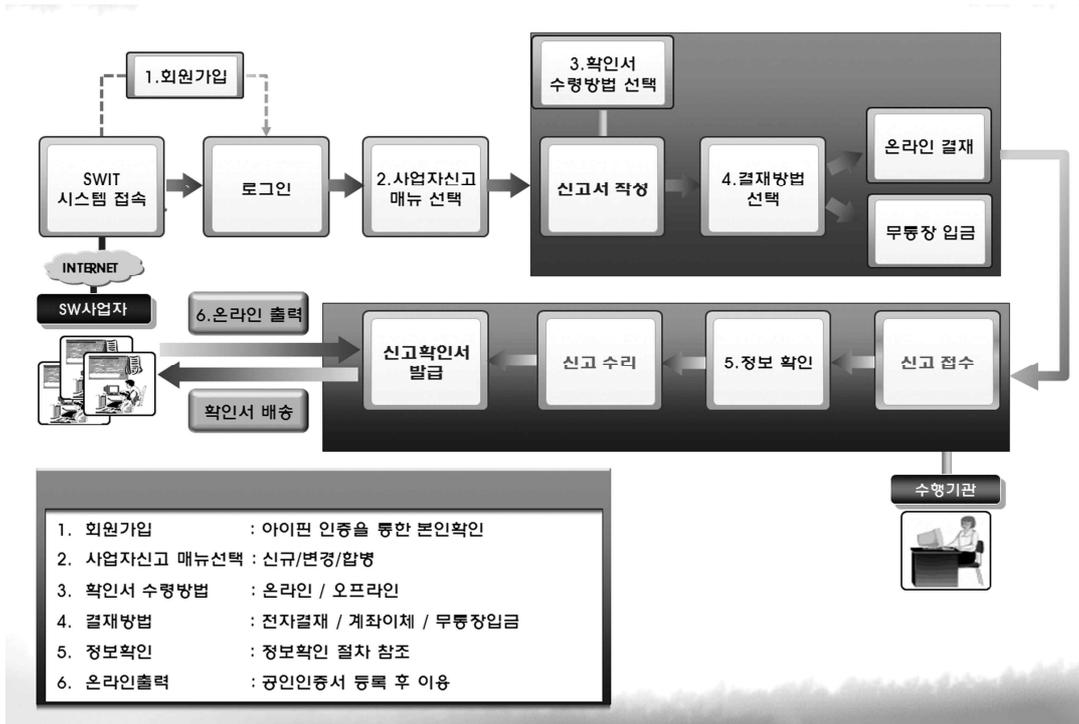
– 공공SW사업 입찰참가 시 입찰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업무에 활용

● 신고의 종류 및 수수료

신고종류	요건	시기	수수료 (VAT포함)
신규신고	최초 신고 시	연중수시	5만원
변경신고	신규신고 후 (신고분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대기업입찰 참여제한금액) 변경이 발생했을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재무정보의 변경은 매년 결산일을 변경일로 한다.)	3만원

-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등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www.swit.or.kr>)을 이용하여 수행기관에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신규신고	변경신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직전년도 재무제표 (당해 신설법인의 경우 제외)	재무현황 변경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자가진단확인서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도로명주소 확인 가능해야함)		
* 중소기업자가진단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 처리기간

-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 수행기관 및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보팀 (☎02-2188-6967)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신고제도

-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SW실적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 신고

- 목 적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관리 및 사업수행실적증명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운영지침
- 신고제도의 활용
 - 사업자가 수행한 SW사업 내용을 수행실적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서, 공공기관 입찰참가 및 협력사 등록 시 유사실적 증명서로 활용함
- 신고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신고대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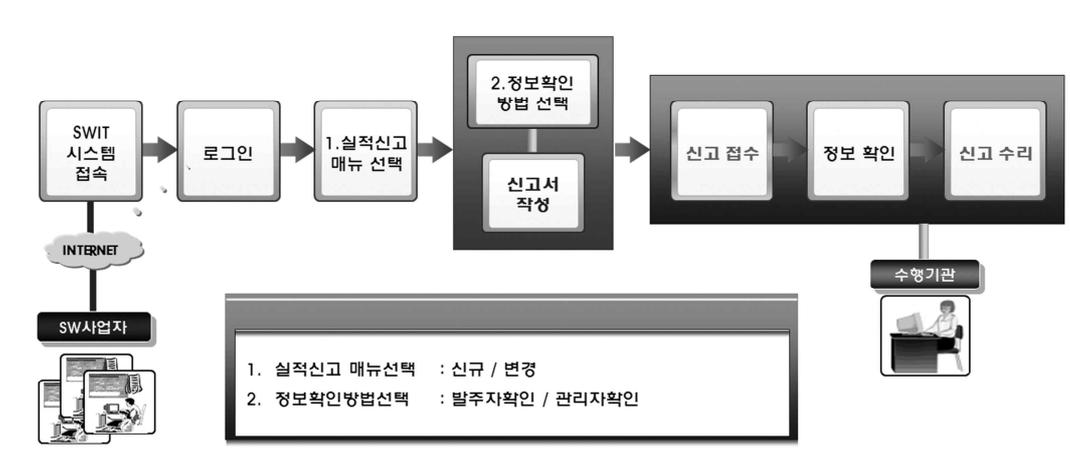
분야	내용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 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 신고의 종류 및 수수료

신고종류	신고 가능 기간	수수료
신규신고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없음
변경신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신고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방법 및 처리 절차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www.swit.or.kr>)을 이용하여 수행기관에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이행완료 되지 않은 실적 신고 시	이행완료된 실적 신고 시
계약서 전문 사본 (신고내역 모두 확인 가능한 계약이행보증 대체 가능)	계약서 전문과 세금계산서 전문 사본 또는 실적증명서 사본 (신고내역 모두 확인 가능한 계약이행보증과 하자이행보증 대체 가능)

(온라인신고 시 상세안내 참조 요망)

- 처리기간 :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 수행기관 및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보팀 ☎ 02-2188-6967

●● 실적신고 제도에 의해 확인된 실적은 입찰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 발급요건
 - 실적신고 제도에 의해 확인받은 실적만 발급 가능
- 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www.swit.or.kr>)이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 ② 아이핀 인증을 통해 가입
-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서 신청 (확인서 수령방법 기재)
- ⑤ 수수료 납부방법 : 전자결제, 현금납부,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 ⑦ 교부방법 : 인터넷발급(공인인증서 필요), 방문수령, 택배, 퀵서비스

* 처리기한 : 즉시
* 발송비용 : 신청자 부담

- 수수료
 - 22,500원(VAT포함) : 실적 10건 초과 시 건당 1천원 부과
- 처리기한
 - 사업수행실적확인서 신청 확인 후 즉시
- 수행기관 및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보팀 ☎ 02-2188-6967

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 입찰참가 시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 목 적
 -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권익 보호 및 발주기관에서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함

대상	목적 및 신고제도의 활용
기술자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 받는 풍토를 정착하고 향후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한 사업자의 부도·폐업·이전·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력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사업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 시 기술자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 제안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소속 기술자의 경력확인 자료를 증빙하기 위함
발주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업자로부터 공신력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부실방지 등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제24조의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7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 운영 세칙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①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란?
 -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 운영세칙[별표4]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자신고 운영세칙 별표4 - 국가기술자격 중 소프트웨어기술자격]

구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단일등급
정보 기술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 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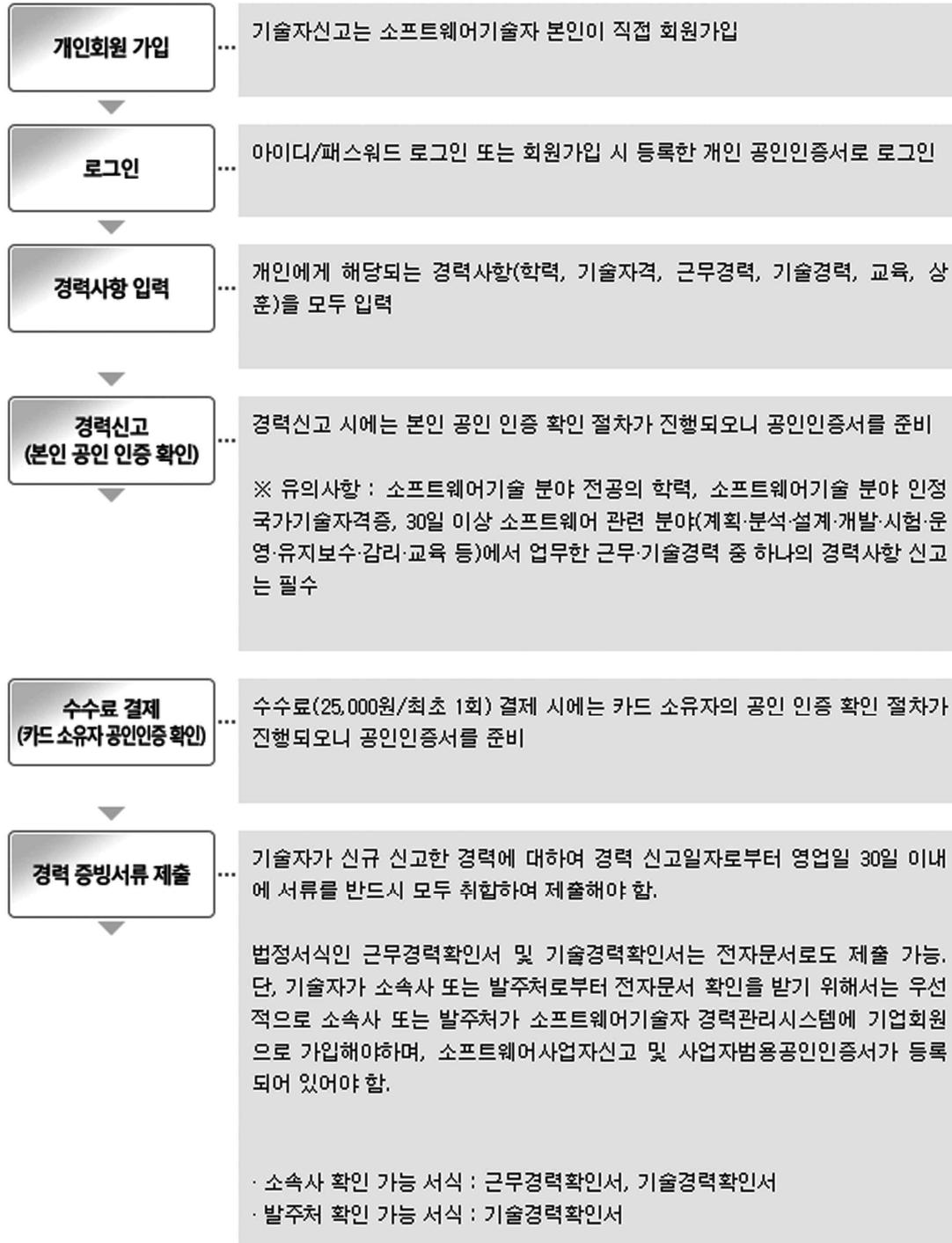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술자신고 운영세칙 별표1 - SW기술업무]

기술분야	직종	기술분야	직종
IT서비스	기획	패키지SW	프로젝트관리
	영업 및 마케팅		업무분석·설계
	컨설팅		아키텍처
	프로젝트관리		SW구현
	업무분석·설계		SW품질
	아키텍처		기술서비스
	SW구현	임베디드SW	기획
	DB구축		영업 및 마케팅
	SW품질		프로젝트관리
	기술서비스		아키텍처
시스템관리	SW구현		
감리	SW품질		
패키지SW	기획		기술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교육	교육강사
	컨설팅	기타	정보시스템

• 신고방법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http://career.sw.or.kr>)에 경력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한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수행기관에 제출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의 종류 및 수수료 등

유형	신고 및 신청 시기	수수료	기타 요건
신규 신고	학력, 기술자격, 근무경력, 기술경력, 교육 및 상훈 사항을 경력관리기관에 처음으로 신고하는 경우	25,000원/최초 1회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전공,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업무한 근무·기술경력 중 하나의 경력사항 신고는 필수임
변경 신고	경력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력, 기술자격, 근무경력, 기술경력, 교육 및 상훈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5,000원/년 (경력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신고 후 1년간 수수료 면제, 이후 경력관리비(5,000원/년) 납부 시에만 변경 가능 변경 신고 시에는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불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경력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2,000원/부	승인받지 않은 근무경력과 기술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미승인 경력으로 표기됨 (단, 학력, 기술자격, 교육 및 상훈 사항은 제외)
정정 신청	승인받은 경력사항에 대하여 오기, 착오 등 내용이 경미한 사안 또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의 경우에 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정정 신청	해당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으로 정정 신청한 경우에만 승인된 경력사항 재검토 진행 정정 신청 시에는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불가

- 처리 기간 : 서류 도착 후 7일 이내
-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보팀 ☎ 02-2188-6980

4.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입 신고제도

- 소프트웨어[솔루션포함], 영상물, 게임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수출입도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신고 제도를 통해 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입 신고

- 목 적
 - 용역 및 소프트웨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물에 대한 해외 수출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무역금융, 해외 마케팅, 수출포상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23조, 제91조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 신고방법 등
 - 신고방법 : 정보통신망(<http://onlinetrade.kita.net/>) 이용하여 수행기관에 신고서 제출
 - 신고의 종류 및 요건

신고종류	신고 요건
수출신고	- 물품 인도 및 수출대금 입금 완료 후 신고
수입신고	- 물품 인수 및 수입대금 송금 완료 후 신고

- 수출입 실적 인정 범위
 - 용역 수출입
 -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운수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직접생산 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원 신청

- 목 적

-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 하기 위해 시행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35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4호)

- 신청 방법 등

- 신청방법 : 직접생산확인 증명원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 수행기관 :

- 중소기업청 : 제도총괄
- 중소기업중앙회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운영
- 한국전산업협동조합(www.cita.or.kr) : 중소기업별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등록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별 지회 : 관할 지역 중소기업 조사결과 서류 관리

- 신청 요건

-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고, 일정 규모의 작업장과 컴퓨터(PC) 시설을 보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발툴, 인터

넷통신 등을 지원받아 자체 전문기술인력이 여러 생산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완성이 가능한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함

- 수수료
 - 신청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프트웨어개발, 컨설팅, 자문, 시스템통합 등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와 현재 사업장 주소의 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 최근년도 갱신 권장
건물등기부등본	- 사업장의 소유자 및 사무실 면적 등의 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와 임대자의 확인 및 임대기간 확인 - 10㎡ 이상의 면적 확인 - 개인 기업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명기된 임대인이 대표자가 아닌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필요
최근 3개월 임대료 납입 영수증	-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인터넷뱅킹증빙 등 확인 - 사무실 이전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전 후 자료만으로도 확인 가능
생산인력 확인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재직인원 전체 명단 필요 - 연금보험료 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청구서(3개월분) : 전체명단 필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유 확인(3개월 이상 재직자)	-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등
전년도 재무제표	-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확인
최근 1년이내 납품실적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계약서 사본 및 매출세금계산서

- 처리기간
 - 직접생산 실태조사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처리
- 문의처
 - 중소기업청 (☎1357),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14)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제도

- 소프트웨어 사업분야 중 시스템통합사업(통신설비 공사, 방송설비공 등) 관련된 입찰 참가 시 자격 요건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신고 목적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함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4조
-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 소재지에 위치한 시·도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식 : 사업자 소재지 시·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메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수행기관 : 사업자 소재지 시·도청
-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4인 이상)	사무실	비고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여야 함)	15제곱미터 이상	기술능력, 사무실기준 법인, 개인 동일
개인	2억원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구분	등록기준	참고사항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업체 : 1억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기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1명, 초급2명, 중급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 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해야 함
사무실	- 15제곱미터이상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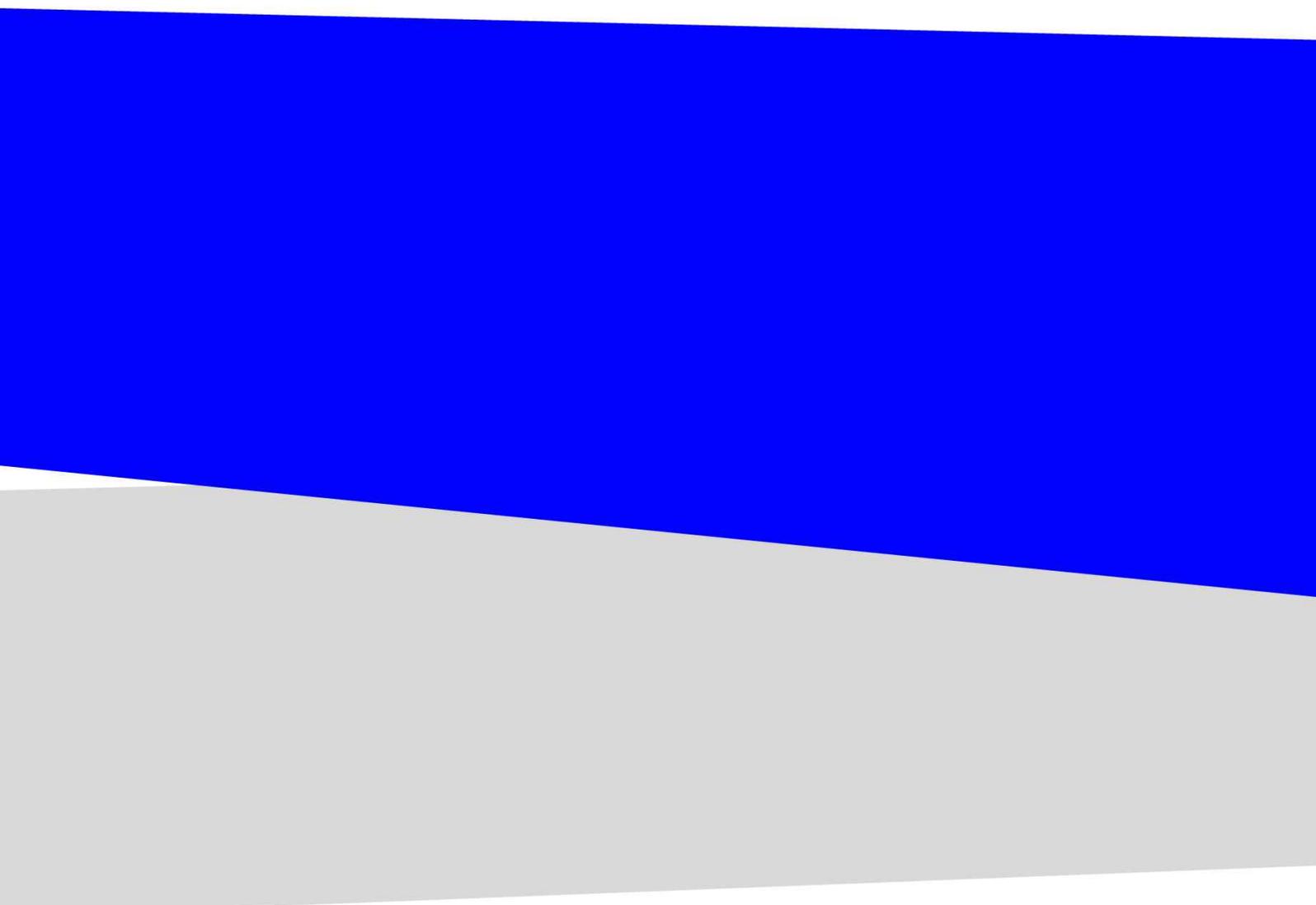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
-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 사무실보유증빙서류
 - 임대차 건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기타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함

● 등록관련 제비용 및 수수료

구분	용도	수수료
제비용	- 기업진단 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 문의)
	-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면허세 납부	• 신청서 접수 시 해당 시·도청에서 안내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 가이드북 ver 3.0

발행일 : 2016년 10월

발행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인 : 조현정

전화 : 02)2188-6900

팩스 : 02)2188-6901~2

홈페이지 : www.sw.or.kr

디자인·인쇄 : 경성문화사(02-786-2999)

* 본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원지원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